

## 재입학에 관한 규정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학칙 제22조에 따라 재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재입학이라 함은 학칙에 의해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제적전의 학적을 회복하여 다시 입학함을 말한다. (개정 2023.11.13.)

**제3조(신청시기 및 대상)** ① 재입학 신청 대상은 자퇴 또는 제적된 일자가 재입학하려는 학기의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전인 사람으로 한다. (개정 2018.7.23., 2023.11.13.)

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학기 개시전 정해진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재입학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. (개정 2018.7.23., 2021.6.1., 2023.11.13.)

[본조 제목 개정 2016.6.16.]

**제4조(절차 및 허가)**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재입학신청에 대하여 교무처의 심의 후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학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. 단, 징계제적자의 재입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(개정 2018.7.23., 2021.6.1., 2023.11.13.)

② 재입학은 학년별 또는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입학 학기별로 산정된 총 여석의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 단, 유아교육과,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산정한다. (개정 2023.11.13.)

1. 1학기: 전년도 4.1.부터 9.30.까지의 3~4학년 제적자수

2. 2학기: 전년도 10.1.부터 당해연도 3.31.까지의 3~4학년 제적자수

③ 재입학 신청자수가 제2항에 따라 정해진 학기별 여석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총 평점평균이 높은 사람, 총 취득학점이 많은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. (개정 2023.11.13.)

④ 제적당시 모집단위가 재입학시 폐지된 경우는 학칙 경과조치의 소속변경 기준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한다. (개정 2023.11.13.)

**제5조(학점인정)** ① 재입학 허가자의 학점 및 성적은 재학시 기 취득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육과정 변경 등으로 취득학점을 재사정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학부(과)에서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다.

② 재입학생이 학점인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.

**제6조(학적회복)** 재입학에 따른 학적회복에는 제적전의 학점, 성적, 휴학기간 등을 포함하고 학사경고 횟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. (개정 2016.6.16.)

**제7조(등록)**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본 대학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(입학금 포함)을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6.3.1.]

부 칙

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